

우체국B2B



우체국B2B판매자 세무교육

세무 필수 상식

사업자의 종류
및
관련 세금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신청

세금납부

※ 본 지침서의 내용은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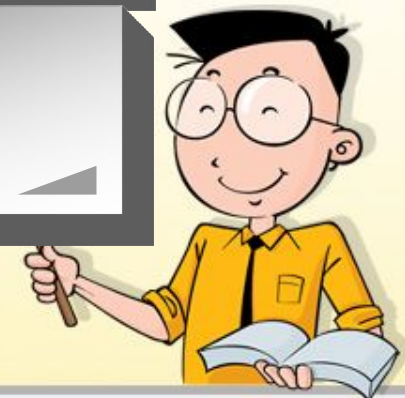
우체국B2B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자격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	직전 1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적용배제사업	없음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특정과세유형장소영위사업· 부동산임대업·전문자격사업 등
포기제도	없음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과세산정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공급대가X업종별부가가치율X10%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매입세액X100%	매입세액X업종별부가가치율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세금계산서 교부가 원칙	영수증을 교부함

※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가산세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미등록가산세	공급가액 X 1%	공급대가 X 0.5%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X 1%	공급대가 X 1%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각종 가산세 있음	없음(협력의무는 있음)
기장의무	매입·매출장 등 기장의무	주고받는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만 보관하면 기장한 것으로 봄

※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기타세무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납부의무의 면제	없음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함 다만,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함
예정신고 제도	① 법인 : 예정신고를 해야함 ② 개인 : 예정신고의무를 면제하여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을 결정하여 고지함. 다만, 예정신고를 해야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확정신고만 함(예정고지도 없음)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 5조)

-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 사업장이 여러개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단, 사업개시전에도 신청가능함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서명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

개인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4.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영리법인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3. 정관 사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5.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6.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함) 1부
 - 허가(등록,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7.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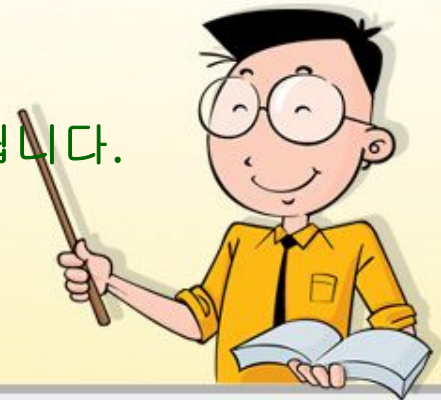
- 상호를 변경하는 때
-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
-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를 변경되는 때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이 되는 때
-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사업자등록신청

TIP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 사업전 상품 또는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자 할 경우
 -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매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서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그만큼 감소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등록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등록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주류판매와 관련된 등록이나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납부

쇼핑몰 사업 세금의 종류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text{부가가치세} = \text{매출세액} - \text{매입세액}$$

- 종합소득세

소득세는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text{소득금액} = \text{연간총수입금액} - \text{필요경비}$$

- 원천세

각종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등

- 면허세



세금납부

세금의 종류 및 납부 기한

구분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 2기확정	4.1~4.25 7.1~7.25 10.1~10.25 1.1~1.25	1.1~3.31의 사업실적 4.1~6.30의 사업실적 7.1~9.30의 사업실적 10.1~12.31의 사업실적
	개인사업자 (일반·간이)	1기확정 2기확정	7.1~7.25 1.1~1.25	1.1~6.30의 사업실적 7.1~12.31의 사업실적
		※ 신규사업자, 환급 등으로 직전과세기간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하여야하며,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 총괄납부자는 예정고지세액납부와 예정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개인사업자 (과세·면세)	확정신고	다음해5.1~5.31	1.1~12.31의 연간소득금액
		중간예납(11.15 고지)	11.1~11.30	중간예납기준액의 1/2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다음달 말일까지		1개월의 유흥음식요금
	투전기설치장소			1개월의 입장인원
	귀금속상			1개월의 판매금액
	가구 제조업 등			1개월의 제조장 반출가격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다음해 1.1~1.31		1.1~12.31의 면세수입금액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원천징수를 한 사업자	일반사업자	다음달 10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반기납부자	7.10~1.10	

세금납부

부가세 와 소득세 비교

	부가가치세	소득세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세 • 매출액의 일정한 부가가치를 납부 •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과세 •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적용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구분 • 법령에 정한 상품 및 제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면제 • 영세율의 적용(수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무기장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 주요경비-(수입금액*지급경비율) • 종합과세주의 채택 • 1년단위로 소득세과세(11월은 중간예납) • 개인별 단위과세 • 누진세율 구조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기한내 미납시 : 납부세액의 일변 3전씩 계속 가산 • 합계표 미제출시 : 미제출 금액의 1% • 세무조사 선정 • 무신고시 : 납부세액의 10%+일변 3전의 가산세 추가(무제한) • 현장조사 및 부가세경정 등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불성실 가산세(20%) • 무기장가산세(10%) : 신규 0.48억 미달 제외 • 납부불성실 가산세(3/10,000) • 지급조서 제출불성실 가산세(2%) : 간편제외 • 계산서관련 가산세(1%), 증빙불비 가산세(2%) •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1%) : 복식부기의무자한 •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10%)



세금납부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얻은 수입 중에서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 계산서는 모든 사업자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계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단위로 하여 과세합니다.



세금납부

부가가치세 신고준비

매출부분에 대한 준비서류

-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 카드사별 발행전표(세액공제2%)
- 온라인판매매출집계표(통장별)
- 현금판매분에 대한 일일판매일보
- 수출승인서 및 팩킹리스트
- 외국환매입증명서
- 기타 매출관련 증빙 및 서류

매입부분에 대한 준비서류

-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입면장
- 매입세금계산서(상품, 자산, 기타 등)
- 카드매입전표(공제여부 확인)
- 지로용 영수증(전기, 전화, 인터넷 등)
- 계산서(면세매입분)

※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확실하게 구분



세금납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출액의 1%(음식,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1.5%)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공제한도 연간 500만원)하여 줍니다.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 부담을 줄여 줍니다.
-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130% 초과한 경우에는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감면되고 일정기간 세무조사가 면제됩니다.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교부 받으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자와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납부

종합소득세

- 장부를 기장·비치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는 누진세입니다.
- 소득세는 자율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는 세액일부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액

과세표준금액	세율
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7%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8%
8천만원 초과	35%

